서비스 이용약관

2024년 11월

㈜더원플랫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및 변경

제4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제2장 계약체결

제5조 계약의 체결

제6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제7조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8조 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제10조 고객의 의무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중단

제11조 서비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일시중단 및 제한

제14조 일시정지

제15조 이용정지

제16조 해지

제5장 요금

제17조 요금의

제18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제19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제20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1조 통화내역의 열람신청 및 교부

제22조 요금 등의 반환

제23조 선불통화사업 관련

제6장 가입자 보호

제24조 이용자 보호 규정

제25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제26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제27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제28조 손해배상

제29조 면책

제7장 할부 및 의무약정

제30조 할부 판매

제31조 의무약정 보조금

제32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33조 위약금

제34조 위약금 면제

제35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36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제8장 지원금

제37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제38조 지원금의 제공 유형

제39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제40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제41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제42조 위약금 면제

제43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9장 번호이동

제44조 번호이동 서비스

제45조 번호이동 신청 및 승낙

제46조 번호이동 전 요금정산

제47조 번호이동 제한

제48조 번호이동 철회

제49조 번호이동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

제10장 청소년

제50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51조 청소년 보호

제52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11장 침해사고

제53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54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55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12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56조 부정송신 관련 용어의 정의

제57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5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59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60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61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62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제63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제64조 부정송신 관리,감독 강화

제65조 부정송신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경

제13장 기타

제66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이용 제67조 기타

부칙

별표1 - 더원플랫폼 요금제 안내

별표2 - 구비서류

별표3 - 불만형태 별 처리절차

별표4 - 정보통신상거래 질서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별첨1- 할부 이용 계약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원플랫폼(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 3.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4. 기간통신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자" 및 "회선설비 보유 유선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 5. 단말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피처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이동전화 기기 전체를 말합니다.
- 6. 임대서비스: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고객이 회사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적용 범위 및 변경]

- 1.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일부 기간통신사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는 기간통신사의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3. 제 1항에서 정한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4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고지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이외에 제 7조의 제 4항 및 제 16조의 제 1항 4호, 9호 및 11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사유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 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주소, 요금 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 년

(국세기본법 제 85 조 3 규정에 의거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 ②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해당 이용요금이 납부 완료 처리될 때까지
- ④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법 스팸 전송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 개월
- 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4.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거 통신가입사실의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명의도용 방지와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우편통지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가입신청서 작성시 고객의 성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과 더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상기 제4조 제3항의 제1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타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상기 제4조 제3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도 동일합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체결]

- 1. 서비스 이용신청 시에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청약과 휴대폰 본인인증, 녹취 본인확인을 통한 청약일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비대면 가입시에는 범용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기기변경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체크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
 - ②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을 명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③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
 - ④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이면서 대리점 또는 본사 내방인 경우 신분증, 인감이 날인 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 인감증명서에는 "회선 개통목적"을 명기) 및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 대리인 입증 서류 제외)
 - 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이면서 본인 및 법정대리인 내방인 경우 (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이면서 대리인 방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을 명기)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 위임장(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2. 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전 제 3항 및 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계약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 6.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기간통신사(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7.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 8.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 (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 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으며,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 및 구비서류의 사본을 보관 합니다.
- 9. 회사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사본을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등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10. 회사는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대리점, 판매점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판매점등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1. 제 1항 제4호, 5호, 6호의 경우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될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제출을 제외합니다.
- 12. 미성년자부모확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되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조부모 또는 삼촌 등이 세대주인 경우) 등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13. 회사는 고객과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 14. 고객이 임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개인고객
 - 가. 임대서비스 신청서: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나. 신분증 사본
 - ② 법인고객
 - 가. 임대서비스 이용계약서: 약관 동의/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5. 고객이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개인고객
 - 가. 라우터 임대서비스 신청서: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나. 신분증 사본
 - ② 법인고객
 - 가.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계약서: 약관 동의/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16. 본 조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 위법적인 본인인증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특정 고객 및 특정 채널에 대하여 추가적인 본인인증(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전화, 서면,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7.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 18.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 6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 수용구역 변경 등 기간통신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③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번호로 변경
-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4.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6.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7. 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8.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 10. 라우터 임대서비스의 식별번호는 012 번호를 사용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각 서비스별 구비서류가 미비 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②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법인 포함)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 세금 및 공공요금 미납자,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록되어 개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⑤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해 처벌 받거나 의심 되는 경우
 - ⑦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⑧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신용평가기관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개통 가능
 - ⑨ 법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 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회사, 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자본금 1억이상 법인,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가능
 - ⑩ 외국인이 2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추가 개통 가능
 - ①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② 정상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의심 되는 경우
 - ③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⑷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⑤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 ⑥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f)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타사 가입 회선 포함하여 180일 이내 선·후불 포함 내국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법인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⑧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⑨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 ② 이용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개통취소(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이력이 7회 이상인 경우
 -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⑤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 ⑥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거절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8조 [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

- 1.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실을 즉시 회사 및 영업점에 알려야 합니다. 그 불고지 및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 2. 주소, 부가서비스,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종류, 명의변경 및 핸드폰 변경의 경우에는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요금미납, 약정내용 위반, 단말기 압류, 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 4.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 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 ②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③ 개인과 법인(개인 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사, 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 5.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제 8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② 제 8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③ 제 8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④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고객과 체결된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 된 경우 신속히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 상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④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획득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3호 및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⑥ 회사는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 변경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고객이 해지 요청한 번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지 처리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요청한 번호에 대하여 임의로 명의 변경하여 타인에게 재판매 하지 않습니다.
 - ⑧ 회사는 출국, 사망, 체류기간이 완료된 외국인의 명의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해지 처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명의변경 하지 않습니다.
 - ⑨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 ⑩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임대서비스 제공 전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21호 또는 제1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 ⑤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가입 제한 또는 이용제한, 해지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10조 [고객의 의무]

고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정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4.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 3자에게 서비스 등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5.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전송 또는 유사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추정 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6.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7.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8. 고객은 고객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요금제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0.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11.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은 고객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고객은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사용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② 해지 시 회사의 단말기를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단말기를 서비스 해지 요청과 함께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유심만을 제공받았을 경우 해지 요청과 함께 회사에 유심을 반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유심을 폐기하지 않아 제3자가 이용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③ ②호에서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사용일수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단말기 잔존가액 (휴대폰 출고가 [사용일수/약정임대기간 x 휴대폰 출고가])을 보상하여야 하며,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청구한 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2. 고객은 이용약관 제10조 제4항, 제7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중단

제 11조 [서비스]

-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된 기능의 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라 합니다)와 고객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의 서비스는 요금납부방식에 따라 미리 요금을 납부하고 납부된 요금만큼 사용하는 서비스(이하 "선불형 서비스")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된 서비스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이하 "후불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회사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 신청고객이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④ 회사명의로 개통된 라우터 서비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라우터 임대서비스는 음성/ 문자를 제외한 데이터 서비스만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고객이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⑤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라우터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하며 라우터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유심만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기간통신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무선 이동 통신입니다
- 3.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12조 [서비스의 이용]

- 1. 고객은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통신방식의 단말기기를 접속 이용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은 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은 고객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통화내역열람은 고객이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6개월간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6.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일반통화내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일부만 표시되는 "요금확인용 통화내역"은 방문신청,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고객센터에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데이터 통화료란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이며, 정보 이용료란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서, 별도로 과금됩니다.
- 8. 무선데이터 과금은 별도 데이터 정액요금 미 기재 시 데이터통화료는 기본 요율이 적용됩니다.
- 9. WIFI(무료 무선랜)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 중 WIFI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4G망(유료)에 접속되며 무선인터넷 요금이 발생합니다.
- 10. 무선데이터차단서비스 이용 시 일부 데이터계열 서비스 등의 사용이 제한되며, 미 가입시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명의의 서비스는 즉시 해지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명의로 승계를 요청해야 하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본사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기간은 임대서비스 신청서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신청서 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까지만 제공됩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일시중단 및 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 또는 기간통신사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③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2.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제 1 항의 1, 2, 4호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5.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2호, 4호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4조 [일시정지]

- 1.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일시 , 기간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일시정지의 신청기간은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까지 허용됩니다..
- 4. 전항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해외장기체류(지정된 구비서류 첨부 시) 및 휴대폰의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5.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연락처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7일전까지 통지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 6.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일시 정지 신청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정산된 요금은 체납요금의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
- 7.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서비스 별 약관에 따라 요금제의 기본료 등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8.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9. 제4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등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을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0. 고객은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에 대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 15조 [이용정지]

-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이 각 호의 이용정지 사항을 해소한 경우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제 10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안는 경우
 - ② 다음 각 항목의 법에 위반한 경우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 나.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다.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라.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 마. '라'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 ③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에서 불법 스팸 전송 및 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정지 2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청소년보호법 제19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이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정지 2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해당 고객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 ⑥ 타인의 명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도용하거나, 도용 등이 우려 되는 경우
- ⑦ 단기간에 과다한 사용 또는 미사용으로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 ⑧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정지 2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가.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 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으
- ⑨ 회사의 "후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2회 이상 요금(7만원 이상은 1회)을 연체한 경우 (이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4조 제4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회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경우
- ⑪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이 일어난 경우
- ②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 ③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⑤ 제7조 제8항, 9항, 10항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거나, 초과 가능 조건이 변경된 경우
- (16)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될 경우
- ①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4조 제4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B)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 나. 서비스 이용기간이 초과된 경우
 - 다.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료의 연체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 (9) 고객의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명의도용,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 ②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KT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KT가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 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1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 3.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5.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문자포함)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6조 [해지]

- 1.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홈페이지, 앱,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신청 시 고객은 해지서류 제출 완료 시 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 해지신청서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홈페이지, 앱, 방문)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되었으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② 선불 서비스의 잔액이 소진(0원)된 후 90일 이내에 요금충전(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소진되면 15일간은 착신만 가능하고 발신은 불가능합니다. 단, 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요금제 별로 상이합니다)
 - ③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⑤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회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⑥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를 할 경우
 - ⑦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 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 ⑨ 제 15조 제 1항 제 4호, 5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⑩ 제 15조 제 1항 제 3호(불법 스팸 및 범죄 연루 사유)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⑪ 제 15조 제 1항 제 8호, 13호, 1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①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에는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내용증명 발송
- ③ 제 15조 제 1항 제 14호에 따른 이용정지 후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 ④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
- ⑤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비스 이용기간이 초과된 경우
 - 나.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료의 연체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⑥ 제15조 제1항 21호(명의도용,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①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1항 10호 및 제15조 제1항 3호(불법 스팸 및 범죄 연루 사유)의 경우는 통지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5조 1항 4호(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연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해지 사유를 12개월간 보관 합니다.
- 4.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 5 장 요금

제 17조 [요금의 종류]

-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입비 : 기간통신사 및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 ②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③ 음성통화료 : 음성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④ 무선인터넷 통화료 :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⑤ 국제로밍 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⑥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⑦ 정보이용료 : 기간통신사,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⑧ 임대서비스 이용료 :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 ⑨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료 :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 2.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이용하는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② 선불서비스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음성/영상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 18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 1.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3.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 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 4.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 5. 선불서비스의 경우,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해지처리 되는 경우에도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9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1.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정액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3.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 4.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 5. 요금을 자동이체(출금,결제)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 3회 이상 미출금(미결제) 시, 후불의 경우 지로로 변경되며, 선불의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1조 [통화내역의 열람신청 및 교부]

-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 사용내역만 제공합니다.
- 2. 회사는 통화내역의 제공 시 고객정보호를 위하여 상대방 전화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 3. 이용 고객이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4.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통화내역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5.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기간통신사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 6.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요금 등의 반환]

- 1.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①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에 통지한 후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전에 회사가 서비스 장애발생 시점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인지 시점부터)
 - ②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부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선불통화사업 관련]

- 1. 회사가 선불통화사업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1억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1억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3.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 4.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5. 회사는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6.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7.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8.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 9.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10.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11.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14일(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3일)간만 가능합니다.
- 12. 수신정지일로부터 30일(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수신정지일) 경과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통화전용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가입자 보호

제 24조 [이용자 보호 규정]

- 1.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의 고객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위원회와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 등의 이용자 보호 기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 2. 이용자 보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② 이용자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입니다.
 - ③ 이용자 보호 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됩니다.
- 3.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고객 10,000명당 1명 이상의 고객 상담요원을 배치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합니다.
 - ②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의 이용자 전용 번호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③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는 평일 10: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 ④ 고객은 통화 장애 및 요금 등의 불만과 고충사항에 대하여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 상담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불만사항 및 의견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 등을 통보합니다.

제 25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제 26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 1.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2.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 3. 회사는 제 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 27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 1.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 무선 인터넷 산업 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 [손해배상]

- 1.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객의 정당한 청구에 의해 배상을 합니다. 단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 4.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29조 [면책]

-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가 발생 된 경우
 - ③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의 상실이 발생 된 경우
 - ④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
 - ⑤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
 - ⑥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 회사는 1항 5호에 해당할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장 할부 및 의무약정

제 30조 [할부 판매]

1. 회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별첨 2. 할부이용계약>과 같습니다.
- 3.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 4. 할부이용 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 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 연체자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의무약정 보조금]

-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비용 또는 이용요금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 3.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회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국제 임대 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4.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 33조 [위약금]

-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 ① 위약금 대상금액을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하거나 전자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로 계산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말 보조금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나. 요금할인 위약금 = 대상 구간별 위약 금액을 누적 합산
 - ③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3. 명의 면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4조 [위약금 면제]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 35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 1. 고객은 본 약관 제 31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단, 기존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2. 전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 3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 하여 청구합니다.

제 36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 31조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상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스마트 어플 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8 장 지원금

제 37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 1. 회사 및 대리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따라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 호 및 2 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단통법 제 4 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단통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38조 [지원금의 제공 유형]

- 1.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시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 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 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이하 "할부지원금"이라 합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대리점은 단통법 제 4조 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9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 1.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40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 1.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국제 임대 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②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 ③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 ④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2.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 47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제 41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통법 제 4조 5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3.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A. 위약금 = 지원금 x { 약정 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B. 차액정산금 = { (변경전) 지원금 (변경후) 지원금 } x { 약정 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 4.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5.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2조 [위약금 면제]

-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 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①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②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이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43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 1. 고객은 약정 잔여기간이 180 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 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 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 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 2. 제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 32조에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

제 44조 [번호이동 서비스]

-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의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 식별번호(01X)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 4.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45조 [번호이동 신청 및 승낙]

-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①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②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 즉, 명의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이동전화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 ③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 ④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46조 [번호이동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②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 합니다.
-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47조 [번호이동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여서는 번호이동을 제한합니다.

-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3.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4. 기존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48조 [번호이동 철회]

-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3.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 4.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 5.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49조 [번호이동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

- 1. 번호이동 서비스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 번호이동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고객이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①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 장 청소년

제 50조 [청소년 이용계약]

- 1.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5 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3.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 51조 [청소년 보호]

- 1.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3.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 ②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 ③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 ④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 ⑤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2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①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②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1 장 침해사고

제 53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2.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3.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4.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4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 ②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 4.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8 조(손해배상)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6. 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사이트(악성앱 유포지, 정보유출지)로의 고객 접속을 확인 시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55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12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56 조 [부정송신 관련 용어의 정의]

- 1.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3.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 4.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법 제 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 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 6. '부정 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제 57 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 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8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 1.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선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시내·시외전화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③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④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⑤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⑥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⑦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⑧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2회 이상)이 있는 경우

제 59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4.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6.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8.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9.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변작 된 발신번호
- ②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 ③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 ④ 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 10.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전송 또는 유사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1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12.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0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1.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2.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0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3.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14.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5. 회사가 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 16. 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 ②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 ③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 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0. 회사는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2.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법스팸 수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송된 스팸에 관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3.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5. 회사는 고객이 제5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6. 회사는 음란 및 불법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27.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 28.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29. 회사는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법적인 사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합니다.

제 61 조 [부정 송신자 이용정지]

-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 임이 확인된 경우 (제59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④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⑥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⑧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⑨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스팸 릴레이 등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가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 ⑩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②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 ③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 (A)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⑤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 등)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호, 13호, 15호, 16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 62 조 [부정 송신자 계약해지]

-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 임이 확인된 경우
 -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⑦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⑧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 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⑩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스팸을 전송한 경우
 - ⑪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 등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 ⑭ 명의도용,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3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 등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2.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전자적 전송 매체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이나 불법스팸의 전송이 발견된 경우
 - ②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유동 IP 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이상 트래픽, Looping 등)
 - ③ 고객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본 조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 64조 [부정송신 관리·감독 강화]

회사는 이용정지 및 계약 해지된 자의 회선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 및 스팸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65조 [부정송신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경]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6조 제8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단,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13 장 기타

제 66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이용]

-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 계열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 3.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 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4.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67 조 [기타]

- 1. 기타 본 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 등에 따릅니다.
- 2. 회사와 관련된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번호이동 본인 확인 절차의 기술적 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주식회사 더원플랫폼 요금제 안내]

1. 후불형 서비스

1) 요금상품

① 5G/LTE 요금제 **VAT포함

① 5G/LTE	요금제					<u>*\</u>	/AT포함
구분	구분	기본료(0.15.15	기본제공	_	QoS 제공	기타옵션
		원)	음성(분) 어요	문자(건)	Data		
LTE	후불 표준	12,100	없음	없음	없음		
LTE	실속 알뜰	9,900	50	100	400MB		
5G/LTE	TOP 알뜰 1GB	5,500	100	100	1GB		
5G/LTE	TOP 알뜰 2GB	7,000	100	100	2GB		
5G/LTE	TOP 알뜰 3GB	9,000	100	100	3GB		
5G/LTE	TOP 무제한 3GB	12,500	기본	기본	3GB		
5G/LTE	TOP 무제한 6GB	16,500	기본	기본	6GB		
5G/LTE	TOP 알뜰 12GB	22,000	100	100	12GB		
5G/LTE	TOP 무제한 12GB	25,300	기본	기본	12GB		
5G/LTE	TOP 300분 15GB	59,400	300	300	15GB		
LTE	TOP 100분 2.2GB+1Mbps	20,900	100	100	250MB		
LTE	TOP 100분 12GB+1Mbps	41,250	100	100	12GB+1Mbps	1Mbps	
LTE	TOP 100분 15GB+3Mbps	56,100	100	100	15GB+3Mbps	3Mbps	
LTE	TOP 300분 15GB+3Mbps	60,500	300	300	15GB+3Mbps	3Mbps	
LTE	TOP 7GB+1Mbps	35,750	기본	기본	7GB+1Mbps	1Mbps	
LTE	실속 U 297	29,700	160	200	750MB		
LTE	실 속 U 418	41,800	250	250	2.5GB		
LTE	실속 U 506 안심	50,600	350	350	6GB		
LTE	실속 U 594 안심	59,400	450	450	10GB		
LTE	실속 U 594	59,400	450	450	10GB		
LTE	우리끼리 U 308 안심	30,800	기본(망외 130 분)	기본	750MB		안심종량
LTE	우리끼리 U 308	30,800	기본(망외 130 분)	기본	1.5GB		
LTE	우리끼리 U 374 안심	37,400	기본(망외 185 분)	기본	1.5GB		안심종량
LTE	우리끼리 U 374	37,400	기본(망외 185 분)	기본	2.5GB		
LTE	우리끼리 U 451 안심	45,100	<u>기본(망외 250 분)</u>	기본	2.5GB		<u> </u>
LTE	우리끼리 U 451	45,100	<u>기본(망외 250 분)</u>	기본	2.5GB		
LTE	누구나 U 329	32,890	기본(부가 30 분)	기본	300MB		데이터밀당
LTE	누구나 U 383	38,390	기본(부가 30 분)	기본	1GB		데이터밀당
LTE	누구나 U 561	56,100	기본(부가 200 분)	기본	5GB		11123
LTE	누구나 U 659	65,890	기본(부가 200 분)	기본	10GB+일 2GB+3Mbps	3Mbps	
LTE	Biz 누구나 U 493	49,390	기본(부가 30 분)	기본	3GB	эмьрэ	데이터밀당
LTE	Biz 누구나 U 659	65,890	기본(부가 200 분)	기본	эсэь 10GB+일 2GB+3Mbps	3Mbps	네시크로
LTE	BIZ 구구나 0 659 망내무한선택형100분6GB	1			·	Sivinhs	
LTE	앙대투안진택왕100분6GB 데이터ON 웹	43,120	100 분(망내무한)	기본	6GB	4001/1-	
LTE		43,000	기본(영상/부가 150 분)	기본	2.5GB+400Kbps	400Kbps	
LTE	데이터ON 톡	49,000	기본(영상/부가 300 분)	기본	3GB+1Mbps	1Mbps	
	데이터ON 비디오	69,000	기본(영상/부가 300 분)	기본	100GB+5Mbps	5Mbps	
5G	TOP 5G 심플	69,000	기본	기본	110GB+5Mbps	5Mbps	
5G	TOP 5G 스페셜	78,000	기본	기본	200GB+5Mbps	5Mbps	

② 디바이스 전용 요금제 ※ VAT포함

구분 요금제 명		기본료	기본제공			QoS 제공 기타옵션	
干正	표급세 경		음성(분)	문자(건)	Data	Q03 416	기다답신
LTE	TOP Device 5GB	11,000	미제공	미제공	5GB + 200kbps	200 kbps	
LTE	TOP Device 10GB	16,500	미제공	미제공	10GB + 200kbps	200 kbps	
LTE	TOP Device 20GB	19,800	미제공	미제공	20GB + 200kbps	200 kbps	

■ 요금상품 기타 조건

-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기본제공
-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본료 부과 : 후불 요금제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시 기본료 3.850원 부과(부가세 포함)
- LTE 요금제 가입을 위해서는 LTE 단말이 필요합니다.
 - : 자급제 단말은 LTE 단말여부와 관계없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요금제의 월 제공량은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 제공됩니다.
- 기본제공통화는 음성/영상 모두 적용됨.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 음성통화에는 HD 보이스를 포함합니다

C-110071 C 0 C	5/00 그는 그이라. 는 프리세에서 세층에는 속대 급증증되에는 ND 포이트를 그림답니다.
서비스 명	내 용
HD 보이스	Volte(이하 'HD 보이스')는 기존 회선 교환망에서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를 패킷 교환망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D 보이스'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과 LTE 망 접속이 가능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HD 보이스'를 수신할 수 있는 고객에게 발신 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LTE 무선망이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통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D 보이스' 서비스는 음성통화의 통화 편의 서비스 중 일부와 발신자 위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D 보이스'이용 시 지원되는 통화편의서비스는 발신번호표시, 발신번호 표시제한, 익명호 수신거부, 착신전환, 국제전환 발신금지, 착신거절(제한), 링투유(통화연결음), 통화중 대기, 음성사서함 전환, 캐치콜, 특정번호 수신차단 서비스입니다.
HD 영상통화	PSVT (이하 'HD 영상통화')는 기존 회선 교환망에서 제공하는 영상 서비스를 패킷 교환망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영상 서비스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HD 영상통화'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과 LTE 망 접속이 가능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영상통화 이용이 가능한 가입자에게 발신 시 서비스가 제공되며 WCDMA 또는 LTE 무선망이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통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HD 영상통화'는 일부 음성/영상 부가서비스와 발신자 위치정보가 미 제공될 수 있음

- ▷ 영상통화 사용 시, 도수당 1.66 초 차감됨.
- ▷ 유무선 망내외 기본제공[음성]의 범위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합니다.
 -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1588, 1577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국내 영상통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월 200분 기본 제공되며, 월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 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로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요일/시간 구분없이 월단위로 제공됨.
-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무선 망내 음성통화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 (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 ② 월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단, 영상통화 사용시, 도수당 1.66 초로 산정)
-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됨.
 -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1 일 500 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② 1 일 150 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 회 초과 발송한 경우
 -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 개 회선을 초과)
 -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 (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 카드배달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확인절차를 통해 상기 기준 예외 적용 가능
-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적용일자 2020.5.8 ~)
 - 단,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LTE QoS 안심옵션 부가서비스 : 월 5,500(VAT포함),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량을 초과하더라도 데이터통화료 무과금 (단, 데이터속도는 400 kbps로 이하로 제공)

○ 초과요율 적용 :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음성	영상	데이터	SMS	LMS	MMS
1.98 원/초	3.3 원/초	0.011원/0.5KB (22.53원/MB)	22 원/건	33 원/건	220 원/건

○ 안심종량 서비스 및 데이터 밀당 부가서비스

서비스 명	내 용					
안심종량	기본 제공량 소진 후 0.011 원/0.5KB(22.53 원/MB,부가세포함)로 이용 가능하며, 5GB 까지는 추가요금 상한(27,500 원, 부가세포함)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B 이상 사용 시 최대 200Kbps(SNS 메신저 텍스트 전송가능 속도)로 이용 가능하며, 속도 제어 해제 신청 7 다. (속도해제 시 0.011 원/0.5KB, 부가세포함)					
데이터 밀당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약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 내에서 1 1월 말까지 사용가능.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1 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1 간 변경 시에는 이월됨)	100MB/500MB/1,000MB 단위 우선 차감됨			
	요금제	누구나 U 329	누구나 U 383	Biz 누구나 U 493		
	당겨쓰기 가능용량	300 MB	1,000 MB	2,000 MB		

③ 복지 요금제 ※VAT포함

구분	기본료(원)	기본제공			QoS 제공	기타옵션
十元		음성(분)	문자(건)	Data	Q05 ^ 6	기타급인
TOP 복지 100분 1GB	6,600	100	100	1GB		
TOP 복지 250분 3GB	11,000	250	250	3GB		

※ 복지요금 감면 전화 서비스 대상자

	대상자	상세	증빙 서류	발급 기관		
	장애인	장애인 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6)에 관계없이 복지 요금제 선택가능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시/군/도지사		
	■전상 군경(21)		■국가유공자증			
	■공상 군경(23)		■국가유공자증			
	■4.19혁명 상이자(51,55)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증			
국가	■6.18자유 상이자(81)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장)		
유공자	■공상 공무(61)	규정한 고객	■국가유공자증			
	■광주 민주화운동 상이자(85)		■광주 민주화 유공자증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상이자(71)			■국가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구청/주민센터		
	차상위 자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을 받는 사람 및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 ※ 주민등록상 수급자와 같은 세대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적용대상 아님 2. 만 7세 이상 등록 가능 3. 1인당 1회선 / 가구별 최대 4회선가능 4.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선택가능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신청 해야야 함 5. 취약계층 전용요금제 선택 가능 대상자 자격 및 갱신시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한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신청 월 포함 매 12개월 경과시 마다 재신청을 위해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함. 6. 재신청을 위한 증명서를 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및 감면자가 속한 가구의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차위계층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내용이 중단.				
	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우선 돌봄 차상위					

■ 특이 사항

- 기초생활대상,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 발급처 직인확인 필수
- 차상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차상위자 정보제공 동의서란 작성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작성하여 첨부. 기존 2회선 이상(타사포함)의 복지회선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해당회선 복지할인 해지 시 복지혜택 복구할 수 없음

(해지 후 당일취소, 14일 이내 철회재가입, 주민번호정정으로 인한 명의 변경, 복지유형 변경/해지, 업무실수)

-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복 수혜자의 경우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통신요금을 감면 받는 고객에 대한 자격변동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매일 제공함으로써 사망, 자격상실 자동 통신요금 감면 중단
- ※ 사외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에 따라 전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통합하여 중복, 부정적수급방지 등 사후관리를 유지하는 시스템
- 복지자격 연동된 정보로 복지자격 상실 (사망 및 자격중단) 확인 시 D+1월(자격상실 후 해당월 까지 감면 혜택 제공) 요금감면 중단 됩니다. (예시 : 2016년 3월 무자격 중단 통보 시 2016년 4월까지 혜택 제공(2016년 5월 자격중단)
- 복지 자격상실 대상 확정시 SMS 발송, D+1월 요금감면 중단 됩니다.

■ 부가서비스

① 무료 부가서비스

종 류	내 용	비고
		o 060정보 이용료의 과도한 요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발신 차단
		ㅇ 미성년자는 자동가입
060발신 차단 서비스	o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 자동차단	-일반요금제 사용 미성년자 신규 및 기존가입자 자동가입
		-법적대리인 동의 후 해지가능
		*청소년 요금제는 일괄 차단 제공되고 있음
국제전화 발신제한	o국제 음성 / 영상통화는 차단하면서, 국제SMS는 허용되는 서비스	o 국제전화 발신제한 서비스와 동시 가입 불가
	o통화 수신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o 수신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
발신번호표시	주는 서비스	o 국제전화 및 회사나 건물 내 사설교환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발신번호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발신번호 표시제한	o발신자의 번호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	o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의 표시를 금지하는 서비스로서 수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입자라 하더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음 (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14조①항의 전화 협박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됨) o 매 통화시 필요시에만 번호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콜블럭킹과 모든 발신통화에 대해 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라인블럭킹으로 구분됨
		o 차단된 SMS / LMS / MMS는 스팸차단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 유선인터넷, 휴대폰 기반 무선인터넷을 통해 확인가능
스팸차단 서비스	o고객이 설정한 조건과 스팸확률 분석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무료	o 차단 메시지는 90일간 100건까지 보관하며, 100건 초과시 순차적으로 삭제됨
	부가서비스 (Data통화료무료)	o 명의자가 13세 이하의 경우 개통시 자동가입, 19세 이하의 경우 개통시 자동가입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o 신규가입, 기기변경시 자동가입

음성 로밍 차단	o국제 로밍시 음성/영상전화 차단	o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원하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가입하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o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구분하여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o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익명의 전화를 차단하여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익명호 수신거부	o익명으로 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	o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 사용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은 멘트가 송출되며 통화가 종료됩니다.
		"발신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통화 하실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해제하신 후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데이터 차단 서비스	o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o 청소년의 경우 가입은 고객단독으로 가능하나, 해지시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네트워크 유해차단	o 무선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② 유료 부가서비스 (부가세 포함)

종류	내 용	요금 (부과기준)	비고
기본팩	기본팩 (링투유+캐치콜)	1,320원	
네임링	○기본멘트 설정, 시간 / 요일대별 멘트설정, 발신자별 멘트를 설정하여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하는 서비스로 최대 100명의 발신자별 멘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된 서비스입니다. ○링투유 이용고객에 한해 해당서비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링투유 해지 시 자동해지됨) ○최대 발신자 100명까지 차별적인 멘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0일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300 원	
링투유	o 최신 음악이나 멘트를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990원	
자동연결	o 수신자 부재 등 이유로 이동전화로 걸려온 통화를 일정시간 수신음이 울려도 받지 못할 경우, 미리 설정해 놓은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770원	○080착신 과금 서비스와 동시에 가입 불가함. ○사업용 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1:1통화목적으로만서비스를이용해야함 ○ 자동연결 서비스의 설정 가능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번호,인터넷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 자동연결서비스 불가번호(X:0~9및그이후번호를의미) ①특수번호(112,113,119,지역번호+112,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등) ②국제전화 국번(00X로시작하는번호대역) ③대표번호 (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등) ④부가서비스번호(예:050X, 080X번호등) 단,050X로 전환 번호설정이 불가하므로, 050X번호로등록된실제번호(위의 착신전환/자동연결 설정가능한 번호)로 전환번호 등록 가능함.

			⑤정보서비스번호(예:060,700등)
			o 금융사,결제사등의 요청에 따라 착신전환을 제한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해당요청 사업자에 있습니다
착신전환	o 일시적인 단말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음성/영상통화 및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미리 설정할 다른 전화로 전환하여 음성/영상 통화 와 메시지를 수신하는 서비스	1,650원	○ 2019.11.01. 이후 선불이용가입자 가입중단 ○ 착신전환 설정 횟수는1일최대50회까지가능함 ○ 080착신 과금 서비스와 동시에 가입 불가함. ○ 사업용 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1:1통화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착신전환 서비스의 설정 가능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번호, 인터넷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 착신전환 서비스 불가번호 (X:0~9및그이후번호를의미) ①특수번호 (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등) ②국제전화 국번(00X로시작하는번호대역) ③대표번호 (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등) ④부가서비스 번호(예:050X, 080X번호등) 단, 050X로 전환번호 설정이 불가하므로, 050X번호로 등록된 실제번호 (위의 착신전환 / 자동연결설정 가능한 번호)로 전환번호 등록 가능함. ⑤정보 서비스 번호(예:060,700등) ○ 메시지 착신전환 관련 제한사항 ①메시지는 1구간만 전달 가능함.(중복전환불가) ②과금 피해가 발생 가능한 소액결재 인증SMS,무선인터넷접속SMS,개인정보와 관련된 SMS는 전달되지 않고 폐기됨. ③이동통신사의 이중번호 서비스의 가상번호로 전환설정될 경우, 보내진 문자메시지는 폐기됨.(예,번호연결 서비스의 이전번호,문자번호 서비스의 이전번호투 등) ④서비스 운용상 고객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고 폐기함.[개인음성사서함 접속SMS(*88), 기타] ○금융사, 결제사등의 요청에 따라 착신전환을 제한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해당 요청 사업자에 있습니다
착신전환통화	o 일시적인 단말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770원	○ 2019.11.01. 이후 선불이용가입자 가입중단 ○ 착신전환 설정 횟수는1일최대20회까지가능함 ○ 080착신 과금 서비스와 동시에 가입 불가함. ○ 사업용 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1:1통화목적으로만서비스를이용해야함 ○ 착신전환 서비스의 설정 가능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번호,인터넷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 착신전환 서비스 불가번호(X:0~9및 그 이후 번호를 의미) ①특수번호 (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등) ②국제전화 국번(00X로시작하는번호대역) ③대표번호(예: 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등) ④부가서비스 번호(예:050X, 080X번호등) 단, 050X로 전환번호 설정이 불가하므로, 050X번호로등록된 실제번호(위의 착신전환/자동연결 설정 가능한 번호)로 전환번호 등록 가능함. ⑤정보 서비스 번호(예:060,700등) ○금융사,결제사 등의 요청에 따라 착신전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해당 요청 사업자에 있습니다

		l	
캐치콜 서비스	o 본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SMS로표시해주는서비스	550원	o 서비스 제공 상황 : 휴대폰전원off, 통화중, 음영지역, 착신 전환 등 o 미수신 통화에 대해 발송되는 건별 SMS는 무과금
LTE 안심 QoS 옵션 1Mbps	O 일정속도(1Mbps) 이하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지정된 LTE 요금제 가입 후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시 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 단, VOD 등 동영상서비스가 이용 제한되며, 통신속도를 1Mbps 이하로 조절하여 웹서핑, 이메일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 - QoS제어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다음부터 적용	11,000원	o 월 중 가입/해지/변경 시 월정액은 일할 계산 적용 o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불가
통화가능 알리미	o 수신자가 통화중이어서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수신자가 통화가 끝나면 이를 발신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발신자 가입형 서비스)	550원	
통화요구 알리미	o 수신자가 통화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발신자의 통화시도정보를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550원	o 수신자가 통화가능상태 전환통보를 거부하는 통화가능 알리미 거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통화가능 알리미와 함께 공지, 홍보
프리미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o 고객이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타 이동전화 포함) 변경된 번호로 전화(음성,SMS,MMS)가 왔을 시 발신자에게 변경된 번호를 음성 및 SMS로 변경내역 안내(MMS제외)하고 변경된 이동전화 번호로 자동연결 해주는 서비스	3,300원	
스마트 공인인증	o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USIM에 저장하여 금융거래 등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인증 서비스	990원	○ 가입형 서비스임 -가입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 앱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 시 KT 고객센터에서 해지처리 가능 -통신사는 월정액 수납 대행 ○ 선불 요금제 고객, 미성년자 가입 불가 ○ 가입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통화료 과금 ○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NFC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가능(단, NFC USIM 장착 필요)
올레tv 모바일 팩	o 스마트폰 olleh tv mobile 어플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전용 데이터 10GB 및 올레티비 모바일 실시간 채널과 무료VOD	5,500원	○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올레티비 모바일 전용 데이터 통화료(10GB) 및 정보이용료 포함 ○ 월 중 가입/해지/변경 시 월정액과 제공 데이터량은 일할 기준으로 계산 제공 ○ 전용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요금 별도 과금 ○ 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 제휴사의 사정이나 계약 변경시 콘텐츠 제공이 변경/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종료 될 경우 사전에 어플을 통해 공지함 ○ 상세 콘텐츠 이용 규정은 올레티비 모바일 이용약관을 따름 ○ 선불 요금제 및 미성년자 가입 불가
올레tv모바일 데일리 팩	o 스마트폰 olleh tv mobile 어플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전용 데이터 2GB/일 및 올레티비 모바일 실시간 채널과 무료 VOD	6,600원	o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단, 법인가입자는 가입불가) o 올레티비 모바일 전용 데이터 통화료(2GB/일) 및 정보이용료 포함 o 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 일할 기준으로 계산

			제공 O 전용 데이터 1 일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요금 별도 과금 O 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O 제휴사의 사정이나 계약 변경시 콘텐츠 제공이 변경/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종료 될 경우 사전에 고객채널(올레 닷컴 공지, MMS-push, Apppush)을 통해 공지함 O 상세 콘텐츠 이용 규정은 올레티비 모바일 이용약관을 따름 O 올레 tv 모바일 데일리 팩 전용데이터 제공량 - 대상 :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 전용데이터 일 2GB 제공 O 선불 요금제 및 미성년자 가입 불가
지니팩_알뜰폰	o 스마트폰 Genie 어플/웹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별도 부과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9,600원	○ 2019.11.01. 이후 선불이용가입자 가입중단 ○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제외)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데이터 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포함 ○ 데이터 통화료 혜택은 본 서비스를 가입한 회선에 한하여 적용됨(타 회선에서 해당 ID로 접속시 데이터통화료 혜택 없음) ○ 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은 일할 계산 적용. ○ 해지 월 재가입 불가 ○ Genie 스마트다운로드(DR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Genie 서비스 제공 가능이 적용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불/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LTE/3G)에서 데이터 통화량이 3GB를 초과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수 있음. ○ 제휴사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계약 변경에 따라서비스 내용이 변경/종료 될 수 있으며,이 경우 3개월전에 www.olleh.com을 통해 고지 후 서비스를 변경/종료함.
시즌 플레인(일 2GB)	o 스마트폰 Seezn 어플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전용 데이터 2GB/일 및 시즌 플레인 실시간 채널과 무료 VOD	6,600원	○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한하여 가입 가능(단, 청소년 요금제, QoS 제어를 받는 요금제, 법인가입자는 가입 불가) ○ 시즌 전용 데이터 통화료(2GB/일) 및 정보이용료 포함 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 일할 기준으로 계산 제공 ○ 전용데이터 1일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요금 별도 과금 ○ 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 제휴사의 사정이나 계약 변경시 콘텐츠 제공이 변경/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종료될 경우 사전에 고객채널(홈페이지, MMS-push, App-push)을 통해 공지함 ○ 상세 콘텐츠 이용 규정은 Seezn 이용약관에 따름 ○ 시즌 플레인(일 2GB) 전용데이터 제공량 - 대상 :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 전용데이터 일2GB 제공
001 국제전화 150분(후불) 001 국제전화 70분(후불) 001 국제전화 150분 pp(선불) 001 국제전화 70분 pp(선불)	○ 상품 개요 : 월정액을 납부하는 경우 국제전화 001 무료통화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 요금제 별 대상국가 ① 001 국제 150분 상품 유형 ☞ 미국(알래스카/하와이), 캐나다, 중국, 태국, 괌, 푸에르토리코 (6개국) ② 001 국제 70분 상품 유형 ☞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5,500원 7,700원 5,500원 7,700원	○ 이용방법 ① 선불: 요금제 기본 제공량 충전주기 내 이용 ② 후불: 매월 1일 ~ 말일까지 이용 ※ 이용요금은 월 단위 과금이며, 무료통화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국제전화 001 표준 요율 적용 ※ 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 001 국제전화 부가서비스 간 중복가입 불가 ※ 또한 단기간에 과다한 통화가 발생 되는 등 부적절한 이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기타 이용조건은 KT국제전화 이용약관에 따름

	마카오, 사이판 (18개국)	
	-1/1 -1 , /1/10/11-1)	

2. 선불형 서비스

1) 요금상품

① 종량형 요금제 %VAT포함

구분	분 요금제 명 기본료/월 (일차감)		음성/초	영상	SMS/건	Data/MB	비고
1 4	표마세 8	기는파/글 (크지크)	B 0/ ±	0.0	31V13/ L	Data/IVID	리포
LTE	TOP 선불 제휴	0	1.98	3.30	22.00	22.53	
LTE	TOP 선불 Basic	9,900/330	1.98	3.30	22.00	22.53	

② 정액형 ※ VAT포함

78	요금제 명		로/월 기본제공			Osc 제고	기타옵션
구분	보급제 링	(일차감)	음성(분)	음성(분) 문자(건) Data		QoS 제공	기다곱신
LTE	선불 300MB+3Mbps	36,000/1,200	기본	기본	300MB + 3Mbps	3Mbps	
LTE	LTE 데이터선택 65.8 (선불)	57,000/1,900	기본(부가 200 분) 기본 10GB+일 2GB+3Mbps		3Mbps		
LTE	데이터 100GB (선불)	59,000/1,967	57 기본(영상/부가 300 분) 기본 100GB+5Mbps		5Mbps		
LTE	TOP 선불 15GB 100분	44,000/1,467	100	100	15GB+3Mbps	3Mbps	

③ 디바이스 전용

구분	요금제 명	기본료/월		QoS 제공	기타옵션		
干正	표급세 경	(일차감)	음성(분)	문자(건)	Data	Q03 416	기다답신
LTE	TOP 선불 Device 5GB	11,000/366	미제공	미제공	5GB + 200kbps	200 kbps	
LTE	TOP 선불 Device 10GB	16,500/550	미제공	미제공	10GB + 200kbps	200 kbps	
LTE	TOP 선불 Device 20GB	19,800/660	미제공	미제공	20GB + 200kbps	200 kbps	

④ 방문판매 제휴 전용 요금제

_							
구분	요금제 명	기본료/월 기본제공				QoS 제공	기타옵션
十世	표급세 6	(일차감)	음성(분)	문자(건)	Data	Q03 A 6	기타답
LTE	ON 종일 3Mbps	55,000/1,833	기본	기본	300MB + 3Mbps	3Mbps	
LTE	ON TOP 11GB	83,000/2,766	기본(부가 200 분)	기본	11GB+일 2GB+3Mbps	3Mbps	
LTE	ON TOP 100GB	99,000/3,300	기본(영상/부가 300 분)	기본	100GB+5Mbps	5Mbps	

⑤ 데이터전용

78		기본료/월	기본제공			O-C 레고	기디오셔
구분	요금제 명	(일차감)	음성(분)	문자(건)	Data	QoS 제공	기타옵션
LTE	TOP 선불 데이터전용 300MB	36,000/1,200	미제공	미제공	300MB+3Mbps	3Mbps	
LTE	TOP 선불 데이터전용 15GB	43,980/1,466	미제공	미제공	152GB+3Mbps	3Mbps	
LTE	TOP 선불 데이터전용 100GB	66,000/2,200	미제공	미제공	100GB+5Mbps	5Mbps	

■ 요금상품 기타 조건

-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기본제공
-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본료 부과
 - : 선불 요금제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시 기본료 3,850원 (부가세 포함) 일차감 128원 (VAT포함)이 일할 적용됩니다. 정액형 요금제는 각 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에 따라 일시정지 기본료 (3,850원)에 도매대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차감 됩니다.
- LTE 요금제 가입을 위해서는 LTE 단말이 필요합니다.
 - : 자급제 단말은 LTE 단말여부와 관계없이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요금제의 월 제공량은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 제공됩니다.
- 기본제공통화는 음성/영상 모두 적용됨.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 음성통화에는 HD 보이스를 포함합니다.

서비스 명	내 용
	VoLTE(이하 'HD 보이스')는 기존 회선 교환망에서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를 패킷 교환망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D 보이스'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과 LTE 망 접속이 가능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HD 보이스'를 수신할 수 있는 │
HD 보이스	고객에게 발신 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LTE 무선망이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통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D 보이스' 서비스는 음성통화의 통화 편의 서비스 중 일부와 발신자 위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D 보이스'이용 시 지원되는 통화편의서비스는 발신번호표시, 발신번호 표시제한, 익명호 수신거부, 착신전환, 국제전환
	발신금지, 착신거절(제한), 링투유(통화연결음), 통화중 대기, 음성사서함 전환, 캐치콜, 특정번호 수신차단 서비스입니다.
	PSVT (이하 'HD 영상통화')는 기존 회선 교환망에서 제공하는 영상 서비스를 패킷 교환망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영상 서비스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HD 영상통화	'HD 영상통화'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과 LTE 망 접속이 가능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영상통화 이용이 가능한
HD 용성운자	가입자에게 발신 시 서비스가 제공되며 WCDMA 또는 LTE 무선망이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통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HD 영상통화'는 일부 음성/영상 부가서비스와 발신자 위치정보가 미 제공될 수 있음

- ▷ 영상통화 사용 시, 도수당 1.66 초 차감됨.
- ▷ 유무선 망내외 기본제공[음성]의 범위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합니다.
-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1588, 1577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국내 영상통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월 200분 기본 제공되며, 월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 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로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요일/시간 구분없이 월단위로 제공됨.
- ▷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무선 망내 음성통화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 (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 ② 월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단, 영상통화 사용시, 도수당 1.66 초로 산정)
-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본 요금제의 메시지서비스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1 일 500 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② 1 일 150 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 회 초과 발송한 경우
 -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 개 회선을 초과)
 -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 (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 카드배달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확인절차를 통해 상기 기준 예외 적용 가능
-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적용일자 2020.5.8~)
 - 단,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초과요율 적용 :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음성	영상	데이터	SMS	LMS	MMS
1.98 원/초	3.3 원/초	0.011원/0.5KB (22.53원/MB)	22 원/건	33 원/건	220 원/건

- 음성통화 기본제공 범위 안내
 -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 17개 대역별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051, 031 등)
 - 인터넷전화 (070)
 - 기본제공 혜택의 적용범위 외 발신 시에는 해당 통화 요율로 부과됩니다.
 - 제공되지 않는 통화: 전화정보서비스 (060), KT114 직접연결, 콜렉트콜, 영상통화, 소액결제 불가
- 상기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은 월단위 (1일 ~말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본료 재충전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료 미 충전 시 월 기본 제공량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이 있는 선불 요금제는 서비스별로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 요금 요율에 따라 충전 잔액에서 차감되며, 이로 인해 충전 잔액이 소진된 경우, 기본 제공량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이 정지됩니다. 단 충전 잔액이 소진된 시점(D일)로부터 사용기간 30일 종료 이전에 재충전이 있을 경우 서비스가 재개되며 남은 기본 제공량을 월 중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이 있는 선불 요금제는 충전잔액이 소진된 시점(D일) 이후부터 15일간 (D+15 일내) 미 충전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회 충전금액별 사용기간

요금제	충전금액(VAT포함)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유지기간		
선불 정액형 요금제	기본료 이상	30일		A 11711 7171 111		
선불 종량형 요금제	5,000원		사용기간 +15일	수신가능기간 내 미 충전 시 해지		
	10,000원	60일		- 65 / 91/1		

20,000원	120일
30,000원	180일
50,000원	365일

※ 기본제공이 있는 선불 요금제의 경우 전용 충전금액 이상으로만 최초 충전 및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olleh WiFi 무료제공
- 차감 우선 순위: 서비스별 기본 제공량 → 공통잔액
-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m-VoIP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이내에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기간 이후 충전잔액은 사용한 금액에 관계없이 0이 됩니다.
- 사용기간 이내에 금액을 충전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15 일이내(수신가능기간) 재충전하면 잔액과 신규 충전 금액이 합산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합법체류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후, 180일 경과 시 정지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명확인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 가능)
- 충전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없으며, 해지시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가서비스

① 무료 부가서비스

종 류	내 용	비고
060발신 차단 서비스	o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 자동차단	o 060정보 이용료의 과도한 요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발신 차단 o 미성년자는 자동가입 -일반요금제 사용 미성년자 신규 및 기존가입자 자동가입 -법적대리인 동의 후 해지가능 *청소년 요금제는 일괄 차단 제공되고 있음
국제전화 발신제한	o국제 음성 / 영상통화는 차단하면서, 국제SMS는 허용되는 서비스	o 국제전화 발신제한 서비스와 동시 가입 불가
발신번호표시	o통화 수신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수신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국제전화 및 회사나 건물 내 사설교환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발신번호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발신번호 표시제한	o발신자의 번호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	o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의 표시를 금지하는 서비스로서 수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입자라 하더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음 (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14조①항의 전화 협박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됨) o 매 통화시 필요시에만 번호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콜블럭킹과 모든 발신통화에 대해 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라인블럭킹으로 구분됨
스팸차단 서비스	o고객이 설정한 조건과 스팸확률 분석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 (Data통화료무료)	차단된 SMS / LMS / MMS는 스팸차단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 유선인터넷, 휴대폰 기반 무선인터넷을 통해 확인가능 차단 메시지는 90일간 100건까지 보관하며, 100건 초과시 순차적으로 삭제됨 명의자가 13세 이하의 경우 개통시 자동가입, 19세 이하의 경우 개통시 자동가입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신규가입, 기기변경시 자동가입
음성 로밍 차단	o국제 로밍시 음성/영상전화 차단	o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원하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가입하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o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구분하여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호 수신거부	o익명으로 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	o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익명의 전화를 차단하여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o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 사용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은 멘트가 송출되며 통화가 종료됩니다. "발신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통화 하실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해제하신 후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데이터 차단 서비스	o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o 청소년의 경우 가입은 고객단독으로 가능하나, 해지시

	서비스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네트워크 유해차단	o 무선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3. 국제 로밍 서비스(KT)

- 가. 국제 로밍 서비스 개요
- o 국제 로밍 서비스란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망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은 보유한 단말기(태블릿 포함)의 국가별 지원 네트워크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ㅇ 국제로밍 서비스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이며, 그 이용요금은 하기 다."국가별 로밍 TABLE"에 의합니다.
 - KT의 KT WCDMA 이용약관의 [별표5] "국가별 로밍 요율 table"과 동일하며,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KT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국제로밍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사용 월의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및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1~2 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 로밍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o 회사는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10,000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로밍이 차단되어도, 로밍 메시지(LMS/MMS)는 사용가능
 - 매일 5,500원/11,000원(부가세 포함) 도달 시 사용금액 안내
 - 110,000원(부가세포함) 도달 시, 사용금액과 차단 안내
- o 고객은 해외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및 USIM 을 분실 또는 도난 시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ㅇ 로밍 서비스 이용 후 고객의 로밍 통화료 산정 시 1 국가 단일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o 환율 변동으로 인한 요율 변경 : 환율의 변화에 따라 반기별로 로밍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전반기와 비교해서 2 월과 8 월에 시행. (기준환율은 IMF 국제기준 통화인 SDR 로 적용: http://www.imf.org/external/fin.htm)
- o 환율변동, 계약변경/추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요율 변경될 수 있습니다. (KT의 기준에 따름)
- ㅇ 로밍 통화료 산정
 - 로밍 서비스 이용시간에 해당국가의 발, 착신 요율을 적용한 통화료 산정 (부가세 별도)
- o 국제 로밍 서비스 이용 시,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다음과 같이 부정사용 우려되는 경우,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A 국가에서 B 국가의 Premium Number 로 통화시도를 하는 경우 (※ Premium Number: 기본 요율 외에 별도의 요금을 과금하는 번호)
 - 일정한 주기로 비정상적으로 통화패턴이 보이는 경우 (예시, 30 초 간격으로 제 3 국으로 발신시도 등)
 - GSMA 에서 관리하는 불법 착신번호로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 (※ GSMA : 모바일의 표준화 이용 장려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MNO 및 관련 기업들의 협회)
 - 로밍 국가에서 제 3 국으로 다량의 발신통화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정사용임이 우려되는 경우
- o 기타 세부사항은 KT의 기준에 따릅니다.

국제 자동 로밍 선택 요금제	내 용	비고
로밍 하루 종일ON	- 해당 요금제를 가입 신청하면 이용 희망일에 한해 해당국가 내 제휴사업자 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 이용료(일정액): 11,000원/일(부가세 포함) - 제공국가지역 : 일본, 중국(중국/홍콩/마카오), 북미/유럽/아프리카. 아시아/호주권 - 기본제공혜택: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일 기본제공 데이터(300MB) 소진 시 데이터 속도 400kbps 이하로 제공 LTE 제공국가에서 LTE로 우선 제공되며,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무료 데이터는 제휴 사업자 망 사용시에만 적용됨 - 제휴 사업자망은 KT올레 이용약관 및 roaming.olleh.com 참조 - 기타: 기내 로밍 ○ 해당 국가 제휴 사업자망 및 여타국가에서 로밍 사용시에는 일반 데이터 로밍 요금 적용됨 ○ 이용료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부과되며, 신청 국가별로 각각 부과됨 ○ 이용료와 기본제공데이터는 고객이 신청한 날짜의 특정시각부터 적용되며 해당시각부터 24 시간 단위로 데이터 이용 가능함(예: '12 년 5 월 1 일 오후 2 시부터 1 일 신청 시 일 이용료 1 만원으로 5 월 1 일 오후 2 시부터 1 일 신청 시 일 이용료 1 만원으로 5 월 1 일 오후 2 시구터 월 신청 시 일 이용료 1 만원으로 5 월 1 일 오후 2 시∼5 월 2 일 오후 1 시 59 분 59 초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함) ○ 별도 연장신청 없을 시 신청 기간 이후 자동 해지 ○ 해당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 혜택은 데이터 로밍 통화료에만 적용(음성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는 제외) ○ 청소년요금, 어린이요금, 데이터 쉐어링 및 선불요금제 고객 가입 불가 ○ 데이터 로밍 요금제(로밍 데이터/데이터 로밍24/ 로밍 데이터팩) 와 중복 가입 불가 ○ 해당 요금제는 최대 연속 7 일까지 사용 가능함 ○ 사용료 환불 조건 : 현지 네트웍 사정으로 사용 기간 내 사용량이 전혀 없을 시, 100% 환불 ○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다량 사용: 1일 사용량이 300MB를 초과한 경우/속도: 200Kbps 이하로 제한) ○ 해당 상품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해외 제휴사 및 회사사정으로 제공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사전 1개월 전에 고객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로밍 하루종일ON (자동형)	해당 요금제를 가입 신청하면 이용 희망일에 한해 해당국가 내 제휴사업자 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 이용료(일정액): 11,000 원/일 (부가세 포함) ○ 제공지역 -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시아/호주권/미주지역 ○ 기본 제공 혜택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일 기본제공 데이터(300MB)소진 시 데이터 속도 400 Kbps 이하로 제공 ※ LTE 제공국가에서 LTE 로 우선 제공되며,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제공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국가 및 제휴통신사는 데이터 로밍 하루종일 요금제와 동일함 ○ 이용료와 기본제공 데이터는 고객이 신청한 날짜의 특정시각부터 적용되며 해당시각부터 24시간 단위로 데이터 이용 가능함 (음성통화/문자/정보이용료 등은 제외) ○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국가출국 시 마다동일 혜택 제공 ○ 해당국가의 제휴 사업자 망 외의 망이나, 여타 데이터로밍 요금이 적용됨 ○ 청소년 요금, 어린이요금, 선불요금제 고객 가입불가(청소년 요금은 로밍 일시허용 가입 후 가입가능) ○ 다른 데이터 로밍 요금제와 중복
로밍 하루종일ON 플러스	- 해당 요금제를 가입 신청하면 이용 희망일에 한해 해당국가 내 제휴사업자 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 이용료(일정액): 13,000 원/일 (부가세 포함) 이 서비스 제공대상:LTE/WCDMA/GSM 이 기본 제공 혜택: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일 기본제공 데이터(500MB)소진 시 데이터 속도 1Mbps 이하로 제공 이 커버리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과 동일	o 기본제공 데이터는 제휴사업자 망사용시에만 적용됨 ※ 제휴 사업자망은 KT올레 이용약관 및 roaming.olleh.com 참조 o 해당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로밍 사용시에는 일반데이터 로밍 요금이 적용됨 o 이용료와 기본제공데이터는 고객이 신청한 날짜의특정시각부터 적용되며 해당 시각부터 24 시간 단위로데이터 이용 가능함

	※ LTE 제공국가에서 LTE 로 우선 제공되며,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ㅇ 별도 연장 신청이 없을 시 신청 기간 이후 자동 해지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o 해당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적용(음성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는 제외)		
		o 청소년 요금, 어린이 요금, 데이터 쉐어링 및 선불 요금제 고객 가입 불가(청소년 요금은 로밍 일시 허용 가입 후 가입 가능)		
		ㅇ 다른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 가입 불가		
		ㅇ 이용료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부과됨		
		o 사용룔 환불 조건: 현지 네트워크 사정으로 사용 기간 내 사용량이 전혀 없을 시 100% 환불		
		o 이용료는 데이터로밍 이용일에 한하여 1 일 요금 부과		
	- 해당 요금제를 가입 신청하면 이용 희망일에 한해 해당국가 내 제휴사업자	ㅇ 데이터로밍 미 이용일에는 이용료 미 부과		
	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o 이용료가 부과 되는 '1 일'은 현지수도시각 0 시~24		
	ㅇ 이용료(일정액): 13,000 원 /일 (부가세 포함)	시를 기준으로 함 (썸머타임 미 적용) 		
로밍	ㅇ 서비스 제공대상 :LTE/WCDMA/GSM	적용		
포공 하루종일ON 플러스(자동형)	o 기본 제공 혜택: 일 기본제공 데이터(500MB) 소진 시 데이터 통신속도 1Mbps 이하로 제공	o 해당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적용(음성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는 제외)		
	o 커버리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과 동일 ※ LTE 제공국가에서 LTE 로 우선 제공되며,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o 제휴 사업자 망 외 데이터 이용 시 일반 데이터 로밍 요금이 적용 됨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제휴 사업자망은 KT올레 이용약관 및 roaming.olleh.com 참조	o 청소년 요금, 어린이 요금, 데이터 쉐어링 및 선불 요금제 고객 가입 불가(청소년 요금은 로밍 일시 허용		
		가입 후 가입 가능)		
		ㅇ 다른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 가입 불가		
		o 기본제공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국가 및 제휴통신사는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요금제와 동일함		
		ㅇ 기본제공 데이터는 제휴 사업자 망 사용시에만 적용됨		
		o 제휴 사업자망 외에서 로밍 사용시에는 일반 데이터 로밍 요금 적용됨		
		ㅇ 이용료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부과		
로밍 하루종일ON 톡	- 해당 요금제를 가입 신청하면 이용 희망일에 한해 해당국가 내 제휴사업자 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ㅇ 서비스 제공대상: LTE/WCDMA/GSM	o 이용료와 기본제공데이터는 고객이 신청한 날짜으 특정시각부터 적용되며 해당시각부터 24 시간 단위로 데이터 이용 가능함(예: 2022년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1일 신청시 일 이용료 1만원으로 10월 1일 오후 2시~10월 2일 오후 1시 59분 59초까지 이용 가능함)		
	ㅇ 이용료(일정액): 3,300 원 /일 (부가세 포함)	ㅇ 별도 연장 신청 없을 시 신청 기간 이후 자동 해지		
	o 기본 제공 혜택: 데이터 속도 200Kbps 이하로 제공	o 해당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적용(음성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는 제외)		
		o 청소년 요금, 어린이 요금, 선불요금제 고객 가입 불가(청소년 요금은 로밍 일시 허용 가입 후 가입 가능)		
		ㅇ 데이터 로밍 요금제와 중복 가입 불가		
		o 사용료 환불 조건: 현지 네트웍 사정으로 사용 기간 내 사용량이 전혀 없을 시, 100% 환불		
	ㅇ 서비스 제공대항 : LTE, WCDMA, GSM	ㅇ 대표 회선이 지정한 회선번호만 "함께ON(서브)" 상품		
	ㅇ 상품 종류 및 기본요금	가입가능		
	구분 기본 제공량 기본요금(대표회선) 유효기간	o 서브회선은 "함께ON(서브)" 상품을 별도로 가입해야 함께ON 적용 되며, 대표회선이 가입한 함께 ON		
로밍 데이터	4GB 33,000원 15일	상품의 이용기간 내 데이터 제공량을 공유 사용 가능		
함께ON	아시아 /미주 8GB 44,000원 30일	o 대표회선 상품 해지는 서브회선이 '함께ON(서브)'상품을 가입중인 경우 해지 불가		
	12GB 66,000원	o 함께ON 충전은 대표회선 고객이 함께ON 이용 중인		
	2GB 33,000원 15일 글로벌 4GB 44,000원	기간 내 1GB 단위로 충전가입 가능(최대 3회 동시 가입가능)		
	6GB 66,000원 30일	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되며 데이터 로밍은 자동		
		1 1-1-0-1190 1191 1191 201 40		

		선 최대 2회선까지 추가	하여 기본 제공량	· 내에서	차단		
	데이터 함께 이용 가능	-			이 기본료 환불조건		
	ㅇ 이용가능국가	010 715			- 함께ON 은 대표회선, 서브회선이 사용기간 중 데이터로밍 사용 내역 없을 시 100% 환불		
	상가포 아시아/미주 홍콩, i 미국, ź	이용 가능 :	마, 베트남, 중곡, 시 보디아, 태국, 필리핀 탄, 카자흐스탄, 스	- 충전은 충전 취소 시 대표회선, 서브회선(충전데이터에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100% 환불			
	라트비 리히텐 슬로베 영국, 스 크로아 헝가리, 모나코, ※ 아시 에스토 이스라 프랑스, 사우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 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슈타인, 마케도니아, 몰도비 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2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 티아, 터키, 포르투칼, 폴란 뉴질랜드, 호주, 쿠웨이트, 세우타, 카나리제도, 아랍 아/미주 지역 국가 포함 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 겔,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헝가리, 뉴질랜드, 아라비아, 모나코, 세우타, 아/미주 지역 국가 포함	리투아니아,				
	ㅇ 로밍 데이터 함께 OI	N 충전 1GB					
	구분	이용 가능 국가	데이터로밍 제	공용량			
	아시아/미주 글로벌	14,300원 18,700원	1GB 1GB				
		III 이용약관 및 roaming.					
데이터 로밍 정액권	지정된 용량만큼 일정 o 상품 종류 및 기본료 구분 데이터로밍하루 30 데이터로밍100M 데이터로밍300M - 데이터로밍 하루 30M 데이터 이월 됨	기본요금 MB 5,500원 11,000원 33,000원	데이터로밍 제공용량 30MB 20MB 100MB 300MB	유효 기간 1일 14일 14일 14일	 ○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됨 ○ 데이터로밍은 제공용량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시데이터로밍 자동 차단 ○ 데이터로밍 제공 용량 소진으로 차단된 후 고객이 차단해제를 요구하여 추가 사용시 패킷당 일반 데이터로밍 요금이 적용됨 ○ 기본료 환불조건 - 사용기간 중 데이터로밍 사용 내역 없을 시 100% 환불 ○ LTE 고객은 LTE 데이터로밍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자를통해 LTE 데이터로밍 서비스 사용 가능 		
	해당요근제를 가인 시청	하면 이용희망기간에 한혀	해 해당국가 내 제	흐사언자	o 기본제공 데이터는 제휴사업자 망사용시에 만 적용됨 o 해당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로밍 사용시에는 일반		
	망에서 데이터를 이용		" -"O I - II - M	교기보업	데이터 로밍 요금이 적용됨		
	ㅇ이용료: 6,600 원/12 /				o 이용료와 기본제공데이터는 고객이 신청한 시점부터 12 시간 적용		
데이터로밍	ㅇ서비스 제공대상: LTE/ ㅇ기본제공 혜택	wcdma/gsm			o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플러스 요금제 이용 종료 후 12 시간 이내 가입 가능		
12 시간	12 시간 동안 기본제공	데이터(100MB) 소진 시 40	00kbps 이하로 제공	공	o 청소년 요금, 어린이 요금, 데이터 쉐어링 및 선불 요금제 고객 가입 불가(청소년 요금은 로밍 일시 허용		
	o 제공 국가: 데이터로명	! 아두콩일과 콩일]레 이용약관 및 roaming.	가입 후 가입 가능)				
	· ^ 에표 열립성으로 Ni	: 10 10 x 10a1111119.1	다른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 가입 불가더데이터 미 이용 시 요금 미 부과				
		해외의 지정된 제휴 사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터로밍을	o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되며 데이터로밍은 자동 차단		
데이터	ㅇ 상품종류				o 데이터로밍은 제공용량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시		
로밍 기가팩	구분	기본요금	데이터로밍 제공용량	유효 기간	데이터로밍 자동 차단 ㅇ 데이터로밍 제공 용량 소진으로 차단된 후 고객이		
	중 일	25,000원	2.5GB	5일	차단해제를 요구하여 추가 사용시 패킷당 일반 데이터		

o 상품별 이용가능국가

구분	이용 가능 국가				
중일	중국/일본				
아시아3GB, 아시아5GB	광/대만/마카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 중국/사이판/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 캄보디아/태국/필리핀/홍콩/라오스/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				
유럽1GB, 유럽 2GB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 러시아/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마케도니아/ 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불가리아/ 세르비아/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아일랜드/알바니아/ 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이탈리아/이스라엘/체코/크로아티아/터키/ 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뉴질랜드/호주/쿠웨이트/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모나코				
미주 3GB 미주 5GB	미국/캐나다/멕시코/그린란드				
※ 제휴 사업자망은 KT올레 이용약관 및 roaming.olleh.com 참조					

로밍 요금이 적용됨

- o 기본료 환불조건
- 사용기간 중 데이터로밍 사용 내역

없을 시 100% 환불

- o LTE 고객은 LTE 데이터로밍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LTE 데이터로밍 서비스 사용 가능
- o 일부 6종 데이터로밍 서비스는 아래 일정에 맞춰 가입이 제한 및 서비스 운영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가입제한 일시 : 2020. 1. 15 이후
- 대상 서비스 : 아시아 3GB, 아시아 5GB, 유럽 1GB, 유럽 2GB, 미주 3GB, 미주 5GB
- 서비스 운영 종료 일시 : 2020. 2. 29
- 대체 서비스로 '로밍 데이터 함께ON' 출시(2020. 1. 15)

다. 국가별 로밍 TABLE

7.7	음성(단위:원/초)			영상			데이터	문자 발신
국가	착신요금	현지	한국/제 3 국	착신요금	현지	한국/제 3 국	(0.5KB 당)	(1 건당)
가나	-	6.38	9.13	-	-	-	0.275	110
가봉	-	5.61	90.31	-	-	-	2.2	220
가이아나	-	21.78	43.45	-	-	-	0.275	330
감비아	-	19.58	43.56	-	-	-	2.2	330
건지섬	-	21.45	87.23	-	-	-	0.275	330
과달루페	-	14.08	83.05	-	-	-	0.275	220
과테말라	18.81	18.81	50.71	-	-	-	0.275	220
괌	1.32	1.98	1.98				0.275	22
그레나다	-	21.78	43.45	-	-	-	0.275	330
그루지아	-	7.15	46.53	-	-	-	0.275	110
그리스	-	1.98	1.98	-	3.3	3.3	0.275	22
그린란드	-	8.8	32.23	-	-	-	2.2	110
기니	-	8.03	29.7	-	-	-	2.2	330
기니비사우	-	18.59	81.07	-	-	-	-	330
나미비아	8.58	8.36	37.73	-	-	-	-	110
나우루	8.58	15.4	27.06	-	-	-	0.275	330
나이지리아	-	9.68	23.98	-	-	-	0.275	220
남수단	12.87	11.44	37.84	-	-	-	-	330
남아프리카	-	8.25	18.15	-	-	-	0.275	110
네덜란드	-	14.08	30.58	-	16.06	27.5	0.275	330
네팔	11.55	17.16	42.9	-	-	-	0.275	330
노르웨이	-	1.98	1.98	-	3.3	3.3	0.275	22
뉴질랜드	-	1.98	1.98	-	-	-	0.275	22
뉴칼레도니아	-	8.36	63.03	1	-	-	2.2	330
니제르	-	14.08	77.66	1	-	-	=	330
니카라과	24.86	16.61	109.45	1	-	-	0.275	220
대만	0.99	1.98	1.98	0.99	3.3	3.3	0.275	22
데시라데	-	14.08	83.05	1	-	-	0.275	220
덴마크	-	1.98	1.98	-	3.3	3.3	0.275	22
도미니카	-	21.78	43.45	-	-	-	0.275	330
도미니카공화국	17.6	17.6	74.58	1	-	-	0.275	330
독일	-	1.98	1.98	-	3.3	3.3	0.275	22
동티모르	-	12.76	29.7	-	-	-	0.275	330
두바이	-	11.88	26.95	-	11.88	26.95	0.275	330
라오스	4.51	8.91	61.38	-	-	-	0.275	330

라이베리아	- 1	8.03	29.7	-	-	-	2.2	330
라트비아	-	6.38	50.16	-	-	-	0.275	110
러시아	0.99	1.98	1.98	-	-	-	0.275	22
레바논	-	11.11	23.76	-	-	-	2.2	330
레소토	-	18.7	41.03	-	-	-	0.275	330
레위니옹	-	14.96	65.78	-	-	-	-	330
루마니아	-	7.81	58.41	-	25.96	129.8	0.275	220
룩셈부르크	_	1.98	1.98	-	3.3	3.3	0.275	22
르완다	_	5.5	26.73	_	-	-	0.275	110
리비아	_	22.11	66.55	_	_	-	2.2	330
리투아니아	_	14.08	76.23	_	28.05	152.46	0.275	330
리히텐슈타인	-	17.38	54.23	-	21.78	66.66	0.275	220
마다가스카르	21.78	11.33	63.36	-	-	-	2.2	110
마르티니크	-	14.08	83.05	-	-	-	0.275	220
마리 갈란테	-	14.08	83.05	-			0.275	220
마요트					-	-		
마카오	- 0.00	14.96	65.78	- 0.00	- 2.2	- 2.2	- 0.275	330 22
	0.88	1.98	1.98	0.99	3.3	3.3	0.275	
마케도니아	-	27.5	85.03	-	-	-	0.275	330
말라위	-	21.01	66.11	-	-	-	2.2	220
말레이시아	0.99	1.98	1.98	0.99	3.3	3.3	0.275	22
말리	-	15.95	79.2	-	-	-	0.275	330
맨섬	-	21.45	87.23	-	-	-	0.275	330
멕시코	16.83	16.83	64.9	-	-	-	0.275	330
모나코	-	16.06	34.65	-	-	-	0.275	220
모로코	-	27.28	136.51	-	-	-	0.275	330
모리셔스	2.86	7.48	44.55	-	-	-	0.275	110
모리타니	-	14.63	55	-	-	-	0.275	330
모잠비크	-	13.31	36.41	-	-	-	0.275	220
몬체러트	-	21.78	43.45	- 47.00	-	- 12452	0.275	330
몬테네그로	-	9.9	116.38	17.93	11.33	134.53	0.275	110
몰도바	2.05	7.7	54.45	-	-	-	0.275	110
물디브 물타	3.85	3.85	36.96	-	-	-	2.2	330
_ :	- 2.00	17.71	102.63	-	-	-	0.275	330
몽골	3.08	13.53	68.2	-	-	-	0.275	220
미국	1.76	1.98	1.98	-	-	-	0.275	22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1.76	1.98	1.98	-	-	-	0.275	22
미얀마	0.66	1.98	1.98	-	-	-	0.275	22
바누아투	-	11	43.45	-	-	-	0.275	330
바레인	-	4.18	19.91	-	-	-	0.275	110
바베이도스 바티칸 시국	-	21.78	43.45	-	-	- 100.76	0.275	330
마디션 시국	- 24.24	15.51	53.13	-	36.63	100.76	0.275	330
	24.31	24.31	122.54	-	-	-	2.2	330
방글라데시 버뮤다	9.35	9.35	18.7 43.45	-	-	-	0.275 0.275	110 330
				-	-	-		
베네수엘라 베넹	-	20.35	75.13	-	-	-	2.2	330
	-	10.56	88.88	-	-	-	0.275	110
베트남 벨기에	0	1.98	1.98				0.275	22
벨기에 벨라루스	- 4.72	18.26 5.5	52.25	-	- 25.86	- 25.96	0.275	330
월다 <u>구스</u> 벨리즈	4.73		72.05 89.54	-	35.86	35.86	0.275	110
보네르	19.8	19.8		-	-	-	2.2	330
보네트 보스니아	-	21.78	43.45	-	-	-	0.275	330
보스니아 보츠와나	-	9.35	27.28 64.68	-	-	-	0.275 2.2	110 330
보리비아 볼리비아	-	15.4	50.38	-	-	-	0.275	330
부룬디	-	7.15	45.21	-	-	-	-	330
부르키나파소	-	15.95	55.88	-			2.2	110
부탄	27.06	33.88	44.66	-	-	-	-	330
불가리아	-	11.88	41.58		17.16	83.05	0.275	330
돌기디에		11.00	41.38	-	17.10	03.05	0.275	330

브라질	3.96	15.4	51.26	-	_	-	0.275	330
브루나이	5.28	5.28	38.61	-	-	1	0.275	220
사모아	-	21.78	43.45	-	-	-	0.275	330
사바	-	21.78	43.45	-	-	-	0.275	330
사우디아라비아	4.18	4.95	27.28	4.18	6.05	40.81	0.275	220
사이판	1.32	1.98	1.98				0.275	22
산마리노	-	23.65	114.18	-	-	-	0.275	330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	10.01	95.81	-	-	-	-	330
생피에르 미클롱	1.54	1.98	1.98	-	-	-	0.275	22
세네갈	-	24.2	60.5	-	-	-	0.275	330
세르비아	-	14.63	116.71	-	14.63	103.73	0.275	110
세우타	-	1.98	1.98	-	3.3	3.3	0.275	22
세이셸	29.37	13.64	49.28	-	-	-	0.275	330
세인트루시아	-	21.78	43.45	-	-	-	0.275	330
세인트마틴	-	11.33	51.26	-	-	-	0.275	330
세인트빈센트	-	21.78	43.45	-	-	-	0.275	330
세인트키츠네비스	-	21.78	43.45	-	-	-	0.275	330
소말리아	12.43	25.08	37.51	-	-	-	-	220
솔로몬제도	9.9	19.91	40.15	-	-	-	0.275	330
수단	-	12.43	27.61	-	-	-	2.2	330
수리남	-	20.35	80.96	-	-	-	0.275	330
스리랑카	0.44	1.98	1.98	3.3	3.3	3.3	0.275	22
스발바르	-	11.11	25.41	-	-	-	0.275	220
스웨덴	-	14.41	45.1	-	18.15	49.28	0.275	330
스위스	-	1.98	1.98	-	3.3	3.3	0.275	22
스페인	-	1.98	1.98	-	3.3	3.3	0.275	22
슬로바키아	-	10.45	54.45	-	-	-	0.275	220
슬로베니아	-	11	57.2	-	22	77	0.275	330
시리아	-	9.35	49.83	-	-	-	2.2	220
시에라리온	-	9.9	21.78	-	-	-	-	220
신트마르텐	-	21.78	43.45	-	-	-	0.275	330
신트외스타시우스	-	21.78	43.45	-	-	-	0.275	330
싱가포르	0.77	1.98	1.98	0.77	3.3	3.3	0.275	22
쎙박뗄레미	-	21.78	43.45	-	-	-	0.275	330
아랍에미리트	-	1.98	1.98	-	3.3	3.3	0.275	22
아루바	-	21.78	43.45	-	-	-	0.275	330
아르메니아	-	11.88	63.91	-	-	-	0.275	330
아르헨티나	13.53	13.53	64.68	-	-	-	0.275	220
아이슬란드	-	1.98	1.98	-	3.3	3.3	0.275	22
아이티	-	21.78	43.45	-	-	-	0.275	330
아일랜드	-	1.98	1.98	-	3.3	3.3	0.275	22
아제르바이잔	-	6.16	80.85	-	-	-	0.275	220
아프가니스탄	9.9	11.88	43.45	-	-	-	0.275	330
앙귈라	-	21.78	43.45	-	-	-	0.275	330
안도라	-	7.15	51.7	-	-	-	2.2	330
안티구아	-	21.78	43.45	-	-	-	0.275	330
알바니아	-	10.56	62.48	-	-	-	0.275	220
알제리	-	8.36	65.01	-	-	-	0.275	330
앙골라	-	8.91	61.16	-	-	-	2.2	220
에스토니아	-	9.35	74.8	-	13.86	111.98	0.275	220
에콰도르	20.35	20.35	78.76	-	-	-	0.275	330
에티오피아	7.48	4.51	63.8	-	-	-	-	330
엘살바도르	15.95	15.95	52.91	-	-	-	0.275	220
영국	-	1.98	1.98	-	3.3	3.3	0.275	2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21.78	43.45	-	-	-	0.275	330
예멘	-	5.83	42.13	-	-	-	2.2	110
오만	-	5.28	23.98	-	-	-	0.275	110
오스트리아	-	1.98	1.98	-	-	-	0.275	22

온두라스	-	17.6	62.48	-	-	-	0.275	330
올란드 제도	8.91	8.91	32.78	8.91	8.91	17.6	0.275	220
요르단	-	11.55	27.83	-	-	-	0.275	330
우간다	-	9.9	45.43	-	-	-	2.2	110
우루과이	14.63	17.93	25.85	-	-	-	0.275	220
우즈베키스탄	5.06	9.46	100.65	-	-	-	0.275	110
우크라이나	5.28	9.35	60.61	-	-	-	0.275	110
이라크	-	4.95	35.53	-	-	-	0.275	330
이란	6.93	6.93	48.73	-	-	-	0.275	220
이스라엘	-	19.58	75.46	-	19.58	75.46	0.275	330
이집트	-	12.1	56.65	-	23.43	113.3	0.275	330
이탈리아	-	15.51	53.13	-	36.63	100.76	0.275	330
인도	36.63	23.98	47.96	_	_	_	0.275	330
 인도네시아	0.77	1.98	1.98	0.77	3.3	3.3	0.275	22
일본	-	1.98	1.98	-	3.3	3.3	0.275	22
자메이카	-	21.78	43.45	-	-	-	0.275	330
잠비아	-	9.46	44.55	-	_	-	2.2	220
저지섬	_	21.45	87.23	-	-	-	0.275	330
적도기니	_	9.9	49.28	-	_	_	2.2	330
중국	1.54	1.98	1.98	1.76	3.3	3.3	0.275	2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9.46	24.31	29.26	-	-	-	0.275	330
지부티	13.31	13.31	92.73	_	_	_	-	330
지브랄타	13.51	7.48	25.63	_	_	_	0.275	330
집바브웨	_	11.55	80.3				0.275	330
차드	11.88	14.3	94.6	-	-	-	-	330
체코	+	1.98	1.98	-	-	-	0.275	22
칠레	-	10.23	52.25	-	-	-	0.275	220
카나리제도	-		1.98	-	+			220
		1.98	 		3.3	3.3	0.275	
카메룬 카자흐스탄	-	13.86	103.51	-	-	-	2.2	330
	8.8	6.71	56.76	-	-	-	0.275	110
카타르	-	1.98	1.98	-	3.3	3.3	0.275	22
카페베르데	-	8.36	107.25	-	-	-	2.2	330
캄보디아	0.55	1.98	1.98	-	-		0.275	22
캐나다	1.54	1.98	1.98	-	-	-	0.275	22
케냐	-	10.23	90.86	-	-	-	0.275	110
케이만군도	-	21.78	43.45	-	-	-	0.275	330
코소보	-	6.16	77.88	-	-	-	0.275	330
코스타리카	-	12.43	24.75	-	-	-	0.275	330
코트디부아르	-	44.11	56.1	-	-	-	2.2	330
콜롬비아	20.13	20.13	67.21	-	-	-	0.275	330
콩고	-	19.8	49.28	-	-	-	2.2	220
콩고민주공화국	-	20.46	51.26	-	-	-	2.2	220
쿠라소	-	21.78	43.45	-	-	-	0.275	330
쿠바	13.75	13.75	81.51	-	-	-	2.2	330
쿠웨이트	0.44	1.98	1.98	-	-	-	0.275	22
쿡제도	-	30.25	78.98	-	-	-	2.2	330
크로아티아	-	17.71	57.2	-	-	-	0.275	220
크리스마스섬	-	9.68	36.3	-	9.13	24.86	0.275	330
키르키즈스탄	-	2.53	68.2	-	-	-	0.275	220
키프로스	-	2.31	21.01	-	-	-	0.275	110
타지키스탄	6.16	9.46	72.16	-	-	-	0.275	110
탄자니아	-	14.85	59.18	-	-	-	0.275	330
태국	1.54	1.98	1.98	1.43	3.3	3.3	0.275	22
터크스앤카이코스군도	-	21.78	43.45	-	-	-	0.275	330
터키	-	1.98	1.98	-	-	-	0.275	22
토고	-	18.7	82.61	-	-	-	2.2	330
통가	-	11	43.45	-	-	-	0.275	330
투르크메니스탄	13.86	17.05	128.7	-	-	-	-	220

튀니지	-	12.98	28.6	-	-	-	-	110
트리니다드토바고	14.41	14.41	48.95	-	-	-	0.275	330
티베트	1.54	1.98	1.98	1.76	3.3	3.3	0.275	22
파나마	14.96	14.96	69.63	-	-	-	0.275	330
파라과이	9.9	16.06	48.4	-	-	-	0.275	220
파로제도	-	11.11	74.8	-	-	-	0.275	330
파키스탄	6.71	12.1	21.45	-	-	-	0.275	330
파푸아뉴기니	-	11	43.45	-	-	-	0.275	330
팔라우	78.98	78.98	138.05	-	-	-	2.2	330
팔레스타인	10.78	16.06	63.8	-	-	-	0.275	330
페루	11	11	50.71	-	-	-	0.275	110
포르투갈	-	15.51	64.9	-	51.81	103.73	0.275	330
폴란드	-	1.98	1.98	-	-	-	0.275	22
푸에르토리코	12.76	12.76	28.6	-	-	-	0.275	220
프랑스	-	1.98	1.98	1.32	3.3	3.3	0.275	22
프랑스령 가이아나	-	14.08	83.05	-	-	-	0.275	22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12.43	72.71	-	-	-	0.275	330
피지	8.58	15.4	27.06	-	-	-	0.275	330
핀란드	0.88	1.98	1.98	1.54	3.3	3.3	0.275	22
필리핀	0.77	1.98	1.98	0.44	3.3	3.3	0.275	22
헝가리	-	1.98	1.98	-	3.3	3.3	0.275	22
호주	-	1.98	1.98	-	3.3	3.3	0.275	22
홍콩	0.99	1.98	1.98	0.99	3.3	3.3	0.275	22

- ※ 상기 요율은 H-MNO의 이용약관 및 국제 로밍 요율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제휴국가 내 데이터로밍 1일 상한 1.1 만원(부가세 포함) 기본 제공
 - 데이터로밍 0.275 원/0.5KB 요금 부과되며 1 일 이용금액이 11,000 원 도달 시 200Kbps 이하 속도로 제공
 - 일 상한이 적용되는 "1일"은 한국시간 0시~24시를 기준으로 함
 - 제휴국가는 상기 다. "국가별 로밍 table"에서 데이터 0.275 원/0.5KB로 부과되는 국가
 - 비 제휴국가에서는 데이터로밍이 기본 차단 됨
- ※ 데이터로밍 비 제휴국 허용
 - 비 제휴국가 내 데이터를 허용하고 2.2 원/0.5KB 로 이용
 - 비 제휴국가 내 월 110,000 원(부가세 포함)에 도달하게 되면 데이터로밍을 자동 차단하는 무료 서비스(당월 누적 금액기준)
 - 비 제휴국가는 본 약관의 [별표 2] "국가별 로밍 table"에서 데이터 2.2 원/0.5KB로 부과되는 국가
 - 고객 요청 시, 차단은 해제됨
 - 5,500 원/11,000 원/33,000 원/55,000 원/88,000 원/110,000 원(부가세 포함) 도달 시, 사용금액을 문자로 안내함 / 110,000 원(부가세포함) 도달 시, 차단 안내
- ※ LTE 데이터 로밍요율 : 본 약관의 [별표 2] "국가별 로밍 table"에서 일반 데이터 요율과 동일

[별표2] 구비서류

1. 가입신청

- 개인

- 개인	구비서류		W.Z.
구분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비고
일반(내국인)	본인 신분증 (단, 비대면 가입 시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기기변경에 한함)으로 대체가능) 장애인복지카드(시/군/도지사 발행)	본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서명의 경우) 본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본인서명)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장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경우에는 일반인의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처장 발행)	본인 국가유공자증서(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도지사 발행)	본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제출 불필요 (단, 18세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나 재직증명서(또는 사증) 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① 본인 +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등) ②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 동의서(인감날인) -위암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 신분증 위 ①, ②의 경우 모두,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제출 불필요 동의와 온라인 본인확인('운영기준 준수사설	일반인의 구비서류와 동일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절차를 거친 경기능합니다. ●회사에 통보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서비스관계 입증서류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기●미성년자 부모 확인서비스: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호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단부모-자녀관계 확인)를 통해 주민등록 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되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 가입 이후 각종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 통신비밀정보 열람 등 별도로 구비서류를 규 는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나능합니다. 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민등록 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 등 등본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회사는 추가적인 법정대리인

	일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외교관	여권, 외교관 신분증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한미군	주한미군 ID카드(또는 주둔명령서), 운전면허증(또는 여권)	주한미군 ID카드 또는 주둔명령서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영주권획득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단, 비대면 가입 시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기기변경에 한함)으로 대체가능.			의 휴대전화 인증(기기변경에

o 요금 감면 대상자

7 1	구	비서류	
구분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비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본인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본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의 구비서류와 동일 -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함 -2009년 8월 12일부터 요금감면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감면신청/갱신시 복지부등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 목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의 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비용을 지원받는 자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의 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비용을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본지법 제 50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 연금법 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우선 돌봄 차상위'	본인 신분증, 차상위자의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제출. -이 경우에는 가구 증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2촌이내의 직계 혈종을 동일 가구로 인정하되, 동거인은 제외	본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제출. -이 경우에는 가구 증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2촌이내의 직계혈족을 동일 가구로 인정하되, 동거인은 제외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의 구비서류와 동일 -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만 유효함 -2012년 1월1일부터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감면 신청/갱신시 복지부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o 개인사업자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개인사입	겁자	o 본인(대표자) 신청시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o 대리인 신청시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특별히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대리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대리행위 가능

o 법인

78	구비서류		
구분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 등록증 본 (고유번호증 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이 신청하여야 함)	①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증 또는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②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증 또는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③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①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 ②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증)			
특수학교	①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증) 또는 ② 위임공문서(법인명의),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증)		

※ 법인 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 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 공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o 국가기관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국가기관	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고유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대리인 신분증(공무원증)	
미군부대	위임공문(부대장명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미군 신분증)	

※가입신청, 명의변경, 통화내역열람 시 내국인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독립 유공자증, 518 민주화 유공자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보훈보상 대상자 등 및 유족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변경신청과 해지 시 내국인 신분증은 가입/명변 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 추가하여, 사진, 성명, 부분적으로 표기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또는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 등도 단독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의사 확인 : 유·무선으로 가입의사 및 위임사실 확인
- 2. 요금납부를 타인명의 계좌(신용카드 등)에서 자동이체 하는 경우 : 자동이체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전화 확인서
- 3.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제,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가. 정상적인 경우

o 개인

·			
구분	내 용		
⊤世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시	o 본인 신분증	o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 신청시	o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o 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시	o 고객정보 확인 (서비스 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청구주소,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	o 고객 정보 확인 (서비스 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청구주소, 비밀번호, 신분증 등) o 대리인 신분 (이름, 생년월일, 관계, 연락번호, 신분증사본 등) 확인	

o 법인

7.4	내 용		
구분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이 신청하여야 함)	①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증 또는 ②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증 또는 ③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증 ④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시	o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 ※ 법인 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나. 예외적인 경우
 - o 장기일시정지 신청/해제

사 유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군입대	O 신청: 군입대확인서류, 본인 신분증 O 복무기간 중 재신청: 본인 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 O 해제: 본인 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군복무해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 ※ 군입대 확인서류는 입영사실 확인서, 입영통지서,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	군입대확인서류 생략) O 해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 단, 입대 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감면된 요금은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시 장기일시 정지해제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해외체류	O 신청 : 해외체류 확인서류(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본인 신분증 O 해제 : 본인 신분증	O 신청 : 해외체류 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O 해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형집행자	O 신청 : 형집행 확인서류(재소증명 등), 본인 신분증 O 해제 : 본인 신분증	O 신청 : 형집행 확인서류(재소증명 등), 대리인 신분증 O 해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행방불명 등	O 신청 : 해당 없음 O 해제 : 본인 신분증	O 신청 : 행방불명 확인서류(가출인 수배 접수증 등), 대리인 신분증 O 해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대리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제출은 생략됩니다.

4. 각종 변경 신청

구분	내 용
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수용구역 변경(전출입)	○ 개 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단, 할부단말기로 변경시는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개명, 개칭	○ 고객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본인 신청시 :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 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은 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명의변경 사유 별 증명서류> 1. 제 18조 제 5항 제 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 18조 제 5항 제 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 18조 제 5항 제 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추가 증명서류> ○ 개 인 - 양도인 방문시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양수인 방문시 : 양도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제3자 방문시 : 양도/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양도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양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가입신청 서류와 동일,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지신청 서류와 동일 ※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모두 양도 가능 ※ 전화 등으로 양도인의 양도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 신분증 제출로 양도 가능(양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생략)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나, 법인의 명의변경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법인이 발급한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 (의료보험증,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기타 임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 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경우에는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명의변경 사유 및 구비서류는 "6. 해지신청, 나. 예외적인 경우" 의 해지사유 및 구비서류와 동일 (단, 구비서류 중 해지신청서는 명의변경신청서로 대체)

5. 일반 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신청

구분	내 용	비고
일반 통화내역	○ 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인증번호 확인 포함)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 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의 경우 열람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 이동전화로 전송된SMS 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 미성년자 명의 단말기 지참,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단, 법정대리인 1인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미 방문 법정대리인과 통화 시행)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O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O 팩스 및 우편 신청시 :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O 인터넷 (www.i-onetop.com) 을 통해 열람 가능	○ 전화신청 불가 ※ 미성년가입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자 동의절차 없이 열람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등) 제출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 열람 가능 (위임대리인 신분증 제출) ○ 인터넷 열람 시 정회 등급별 기준에 의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SMS인증 또는 공인인증 후 제공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6. 해지 신청

가. 정상적인 경우

ㅇ 방문시

구분		내 용
	본인 방문시	O 신분증
개인	대리인 방문시	O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가능 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O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 시 : 본인 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o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 시 사업자 등록증 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o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구분	내 용
본인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대리인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전화 등으로 본인 해지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해지신청 가능함

※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신청가능,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 해지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나. 예외적인 경우

고객유형	해지사유	대리인제한	구비서류	비고
개인	사망	가족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사망사실 확인가능 시 사망확인서류

		요금 납부인	사망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생략 가능	
	군입대	가족	군입대확인서류(입영일자/결과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입영일자/결과조회는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www.mma.go.kr) 에서 확인가능	
	해외체류	가족	해외체류 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형집행자	가족	형집행 확인서류(재소 증명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행방불명 등	가족	행방불명 확인서류(가출인 수배접수증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신청가능시기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일로부터 1개월 이후	
	법인폐업 또는	폐업전 대표자	폐업 확인서류(말소 등기부등본, 폐업사실 증명서 등), 대표자 신분증	신청가능시기 :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법인	사업의 일부나 전부 폐업	요금납부인	폐업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폐업확인서류 . 생략 가능 (폐업에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는 화사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재공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별표3] 불만형태 별 처리절차

1. 이용자 불만 사전방지 계획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발생 가능한 불만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절차를 설계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 한다.

구분	내용
사내 교육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용자보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상담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고과 반영
법률 준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통화 감청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감청에 따른 고객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감청 종료 시 사후통지
자체 회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의체운영으로 고객요구사항 반영
고객 안내	이동전화서비스의 공정한 정보 제공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서비스가입 시 주요정보 제공

2. 인입 경로 별 처리 절차

- ① 민 중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을 통해서 오는 민은 사전에 민절차를 구축하도록 하여, 서비스 개시 이전에 관련 담당자와 민처리시스템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하여 적시 적절하게 민처리를 하도록 한다.
- ② 모든 민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문의/불만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경미하고 유형화 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칙으로 한다.
 -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내부절차 변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24시간 이내 처리 방향을 알려드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를 칙으로 한다.
 - 향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고객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파트에서 지하도록 한다.

3. 문의/불만 처리절차

- ① 고객지원 센터로 접수되는 고객의 불만이나 고충을 고객위주로 민을 처리 하고,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이 직접 이를 처리토록 한다.
-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한 상담과 상담 결과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에 대한 시간(24시간 이내 처리방향을 알려드리고, 접수 후 3일 이내 고객에게 통보)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고, 문의/불만사항이나 장애가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고객에게 문의/불만처리나 장애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4. 불만 형태별 처리 대책

불만형태	처리 대책	처리기간
명의도용	명의도용 사실 접수 후 직권해지, 지로납부 변경 후 명의도용 VOC 이관 후 담당부서 처리	14 일
요금 불만(통화료, 데이터이용료)	통화 열람을 통한 부당 과금 확인	1 일
통화품질 불만 (일시적 품질 불량)	기본 체크사항 점검, 통화품질 부서 이관	1 일
통화품질 불만 (지역적 특성 장기적인 불량)	지역 확인 후 KT 통화품질 부서 이관(중계기 설치 요청 및 전파측정 요청)	2 일
판매점 불친절	담당 매니저를 통한 판매점 경고 조치	1 일
상담사 불친절	관리자 2차 통화를 통한 사과, 해당 상담사 보수 교육	1 일
서비스 불만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후 반영	7 일
가입정보 오등록에 의한 불만	가입서류 확인 후 정보 오등록에 따른 피해 복구 가입정보 수정 처리	1 일
요금미납 및 이용정지	민원 접수 후, 1 일 이내 민의 인을 설명하고 3 일 이내 해결을 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3 일

[별표4]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1.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 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함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o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함 o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 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함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2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o 개인 명의자 1 인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을 5 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음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o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 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요청

별첨 1. [할부 이용 계약]

제 1조 [할부 이용 계약]

- 1. 고객은 휴대폰 할부 이용계약서에 의하여 대리점 또는 회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업체로부터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리점은 휴대폰 할부 이용으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 이용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회사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고객은 승낙합니다.
- 2. 고객은 1 항에 의해 회사에게 양도 된 할부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본 계약의 성립 이후 즉시, 회사와 계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에게 양도함을 이의 없이 승낙하며, 금융기관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3. 할부 이용계약은 회사 또는 대리점이 휴대폰의 할부 이용, 할부금채권의 양도 등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할부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성립합니다.
- 4. 고객의 연대보증인은 고객이 회사, 대리점과 계약한 본 매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 2조 [이용 계약 조건의 결정]

- 1. 휴대폰 할부 이용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은 휴대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 이용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휴대폰의 할부 이용 계약기간은 36개월 이내로 합니다.
- 3. 할부 이용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소요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은 휴대폰 할부 구매 시 할부금액 및 할부기간에 따른 할부 제반 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리점은 회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제 3조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대리점과 계약한 구매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회사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고객의 할부금 납입의무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 의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 2. 고객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우편물 및 대금 청구주소, 할부금을 납입할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최후로 통보한 주소에 회사가 발송한 송부서류는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고객은 제 2 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및 송부서류 등의 미 도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고객은 휴대폰 할부 구입 시 채권보전료가 발생 될 경우 대리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대리점은 고객이 납부한 채권보전료를 회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회사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제 4조 [할부금의 납입방법]

- 1. 고객은 "할부 이용계약"에 따라 발생한 할부금을 회사가 정하는 청구방법으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이 납입해야 할 할부금의 월 납입금은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납입하여야 하며, 고객은 할부기간의 최종납입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3. 할부대금의 납입 중에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 정지 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객은 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한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부터 우선 충당합니다.
- 5. 할부금이 제 1 항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전액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할부금 미납 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6. 할부대금의 수령 후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 7. 고객은 회사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게 그 취지를 알려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5조 [지연손해금]

고객이 계약 납기일까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연체한 금액의 월 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제 6조 [지위양도 승낙]

- 1. 할부기간 중에 고객이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고 회사의 동의 하에 명의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명의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 고객은 채권보전 적격자에게만 휴대폰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양도할 수 있으며, 모든 할부 이용 계약조건은 명의변경의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3. 고객은 할부기간 중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제외한 할부 이용계약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고객이 명의변경 절차 없이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할부금 납입의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4. 고객이 휴대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이 할부 이용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수인이 신용상의 부적격 사유로 할부 이용계약의 승계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소유권 이전 처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 되어 처리가 완료 될 때가지 소유권 및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제 7조 [고객의 철회권]

- 1. 고객은 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이용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이 제 1 항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회사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3. 제 1 항의 규정에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핸드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8조 [기한의 이익상실]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금의 납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나머지 할부금 전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일시에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납입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② 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제 9 조 [계약의 해제]

고객 이 할부금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조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해지]

- 1. 할부기간 중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고객은 잔여 할부금에 대하여 잔여 할부기간 동안 할부 납입하거나 일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제 1 항에 규정에 따라 휴대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고객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회사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신용보험의 가입]

- 1. 회사는 고객에 대한 할부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보험 계약은 연대보증 채무를 주 채무로 하고 주채무자는 고객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체결합니다.
- 2. 채권보전료는 고객이 본 계약 체결시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제 1 항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고객의 납입하지 않은 할부금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고객의 미납할부금을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고객에게 대납금액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4. 고객이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보험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연체로 통보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